

瑞山市災害對策基金運用管理條例改正條例案  
**審 查 報 告 書**

## 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9. 5. 18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9. 5. 18
- 라. 上程日字 : 1998. 5. 25

## 2. 提案說明要旨 (提案說明: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崔春煥)

### 가. 提案理由

-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「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」가
  - 지난 '98.7.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'98. 4.月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“개정조례표준안”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主要骨子

-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 하도록 함.

- 기금은 서산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 하되
  - 기금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음.
-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.
-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함.
-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
  - 시장소속하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고,
  -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는 “기금의운용계획”, “기금의 운용계획의 변경사항”, “기금의 결산”, “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”임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'98. 4월 행정자치부에서
  - 자치단체에서 제정·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영·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 
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, '96.7월 내무부에서 시달한 『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』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고,

- 일부 자치단체의 조례가 업무미숙 등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한 『개정조례표준안』과 '98.7.16일 개정된 『지방재정법시행령』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표준안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이후 현재까지

-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에 큰 문제점이 없었는지와 그동안 어떻게 운용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
**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: 생략**

**5. 討論 및 少數意見 : 없었음**

**6. 審查結果 : 원안대로 가결**

제안번호	제 66 호
의결 년월일	1999. 5. 26. (제 39 회)

##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5. 18.

#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6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5. 10

제 출 자 : 서산시장

## 1. 개정이유

-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기금표준조례안(행정자치부)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함을 조례에 명시하고,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정금고에 예탁·관리하되, 기금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의 비율을 조례에 열거하고자 함(안 제3조).
- 나.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(98. 7. 16)으로 인하여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세계현금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고자 함(안 제5조).
- 라.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(안 제6조).
- 마.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,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을 명시하고자 함(안제7조 내지 제9조).
- 바.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을 열거하고자 함(안 제10조).

##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

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금의 조성)**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
2. 기금의 운용 수입
3. 기타

**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**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조성계획
2. 기금의 사용계획
3. 기금의 운용방법
4.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

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

③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(50~70 범위내에서 조정)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기금의 용도)** 이 기금은 영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1.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·정비를 요하는 사업
2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
3.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

4.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, 수문, 배수관, 유수지 및 수위·강수량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
5. 하수도시설(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)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
6. 수리시설중 배수장, 방조제, 용수로,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
7.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(시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)의 정비사업

**제5조(기금의 회계관리)** ①기금의 수입, 지출 및 출납·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**제6조(회계공무원 등)**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총무국장
2. 기금출납원 : 재난방재담당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.

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, 실·과장 및 사업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방재담당인이 된다.

**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**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
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
3. 기금의 결산
4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9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.

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결산및 보고)**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한다.</p> <p>③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·관리한다.</p>	<p>제3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의 조성계획</li> <li>2. 기금의 사용계획</li> <li>3. 기금의 운용방법</li> <li>4.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</li> </ol> <p>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,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(50~70범위내에서 조정)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용도) 이 기금은 영 제5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·정비를 요하는 사업</li> <li>2.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</li> <li>3.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·용역사업</li> <li>4.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, 수문, 배수관, 유수지 및 수위, 강수량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</li> </ol>	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기금의 회계관리) 이 기금의 수입,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<u>서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(신설)</p> <p>제6조(회계공무원 등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</p> <p>(신설)</p>	<p>5. <u>하수도시설(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)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</u></p> <p>6. <u>수리시설중 배수장, 방조제, 용수로,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</u></p> <p>7. <u>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(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)의 정비사업</u></p> <p>제5조(기금의회계관리)①기금의 수입, 지출 및 출납·보관에 관하여는 <u>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<u>서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6조(회계공무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<u>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7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<u>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u></p> <p>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등 포함 <u>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(신설)	<p>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.</p> <p>④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, 실·과장 및 사업소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범위 내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방재 담당이 된다.</p> <p><b>제8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</b>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금의 운용계획</li> <li>2.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</li> <li>3. 기금의 결산</li> <li>4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
(신설)	<p><b>제9조(위원회의 운영)</b>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</p> <p>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.</p> <p>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<b>제7조(결산 및 보고)</b>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<b>제10조(결산 및 보고)</b>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시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